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공보

제495호 2017. 4. 06.(목)

선람	기관의장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7-6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승인사항 고시 ---------- 2

회람									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7 - 66호

공유수면 점용.사용 변경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 합니다.

2017. 4. .

사 천 시 장

1. 점용.사용 승인번호 : 제2017-1호

2. 점용.사용 변경 승인 연월일 : 2017년 1월 31일

3. 점용.사용의 목적

○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(당초 : 바다케이블카 중간지주)

4. 점용.사용의 장소

○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-2번지 지선 공유수면

5. 점용.사용의 변경 면적 : 8,427㎡(당초 : 814㎡)

6. 점용.사용의 기간 : 2015년 12월 18일 ~ 2045년 12월 17일 (30년)

7. 점용.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
가. 성 명 : 사천시장(도로과장)
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8. 점용.사용의 승인조건 : 붙임 참조

승 인 조 건

1. **승인목적 준수** : 피승인자는 승인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.사용할 수 없습니다.

2. **승인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승인 :** 피승인자가 면적, 기간 등 본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점용.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3. **본 승인 관련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행 등**

가. 동 시설물 운용 시,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(폐기물), 죽은 물고기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나. PE부잔교 추가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발생 즉시 수거·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
다.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및 해양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파손, 부식 등 발견 즉시 수리·보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.

라. 어선의 이·접안 및 유류 급유 시,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동 시설물에 폐유통 등의 유류저장 용기를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.

마. 동 시설물 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4. **문화재 관련 :**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5. **지시사항 준수 및 이행 :**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.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인.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,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
6. 시설물의 관리

가. 설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.시행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
나. 설치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승인자의 부담으로 시설보수,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다. 시설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
7. 허가사항 취소 또는 행정처분

가. 공유수면관리법령과 승인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장래 산업단지 지정 및 공유수면 매립 등을 위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본 승인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, 이 처분으로 인해 피승인자가 입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청에게 일절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나. 공공 또는 공익사업 등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용승인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으며, 불승인 처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관리청의 지시에 대하여 피승인자는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8.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: 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점.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피승인자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, 동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9. 승인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 등 : 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**60일** 전부터 **30일**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승인(기간연장) 신청하여야 합니다.

10. 민원 해결 등 : 동 공유수면 점.사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 피승인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.

11. 승인조건의 이행 :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끝.